

제2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발의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 의 자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화숙의원외6인】
2.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희재의원외6인】
3.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4.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5.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성 주 군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4.

발의자 : 이화숙 · 도희재 ·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의원

1. 주 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하고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2. 제안이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행정추진 상 잘못에 대한 원인 규명과 시정책을 마련하여 보다 바람직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4. 11.

발 의 자 : 도회재 · 구교강 · 김경호
김종식 · 여노연 · 장익봉
이화숙 의원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의원 구성에 성별 균형 및 대표성을 제고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7조 제1항 중 “각1인”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여성위원장 1인)”으로, “3인 이내”를 “2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1회”를 “2회”로 변경

3. 조 례 안 : 불 입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4. 18. ~ 4. 24.(의견없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여성 부위원장 1인)”으로, “3인 이내”를 “2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u>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u>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u>3인</u>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u>1회</u>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7조(구성 등) ①----- <u>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여성부위원장 1인)</u>----- <u>2인 이상</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u>2회</u>-----.</p>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 읍·면·동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4. 21.

발 의 자 : 구교강 · 도희재 · 김경호
김종식 · 여노연 · 장익봉
이화숙 의원

1. 제정이유

- 성주군 관내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군의 지원을 확대·구체화하고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예우 및 홍보, 우대 및 확인(안 제5조 ~ 안 제7조)

3. 조 례 안 : 불 입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4. 28. ~ 5. 3.(의견없음)
- 관계법령 : 「병역법」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훌륭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제1대 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4. 21.

발 의 자 : 김경호 · 도희재 · 구교강
김종식 · 여노연 · 장익봉
이화숙 의원

1. 제정 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안 제2조 ~ 안 제3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4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5조)
-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안 제6조)

3. 조 례 안 : 불 입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4. 28. ~ 5. 3.(의견없음)
-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주군 소속으로 성주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제7조에 따른 성주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6.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업
7.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별 적용사항

제5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와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교육·의료·환경·복지·문화·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8877호(2022. 6. 1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희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유희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4. 11.

발 의 자 : 이화숙 · 도희재 ·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의원

1. 제정 이유

- 성주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대상(안 제1조 ~ 제3조)
- 준수 책무,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제7조)
- 장기요양기관장 책무(안 제8조)

3. 조 례 안 : 불 입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4. 18. ~ 4. 24.(의견없음)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 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